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트러스톤 벨류웨이 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p>
<신 설>	<p><u>부 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